[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 12. 12.>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휴 업 급 여
[ ] 상병보상연금 청 구 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휴업, 상병 : 7일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청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확인 사항	①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취업함 [ ] 취업하지 못함 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

※ 기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우리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하여 원활한 사회·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서비스를 체크하세요.

원직장복귀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재활스포츠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뒷면><개정 2018. 12. 12.>

1 구비서류

● 휴업급여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상병보상연금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2 휴업급여 제도

● 휴업급여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 ·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수령 중에 일정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하여 지급

3 상병보상연금 제도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거나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 ·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	입원환자 2회분 이후 휴업급여 및 상병연금은 1회 최초의 청구로 자동지급이 되며,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 ※ 입원하다가 통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우선지급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차액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급여청구"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욕 고취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심리재활	**재활스포츠 지원**	상병 및 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수영,헬스,요가 등 스포츠 비용 지원(최대 3개월)
	심리상담	산재근로자의 불안,우울,가족 및 대인관계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요양 중에 있는 산재근로자의 요양단계별(입원,통원)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심리안정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지원
직업재활	**원직장복귀 지원**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재활상담, 소견서 무료발급등'** 의 서비스 제공 산재근로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 을 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재취업창업 지원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장해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알선, 창업 지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